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신설 및 지원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8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2
1.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신설 및 지원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12. 31.
3.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신설 및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시책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예비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營農)·영어(營漁)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8.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3(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u> <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창업, 영농·영어 정착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2. 농어업경영체 취업지원 및 공동</u>

현행	개정안
	<u>영농에 관한 사항</u> 3. <u>농어업경영체와의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정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개정안은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지난 30년간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농가 인구는 231만 4,000명, 농가 수는 103만 5,000가구로,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것임.

[표 1] 30년간 농가인구 및 농가 수 및 비중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농가인구 (비중)	666만 1천명 (15.6%)	403만 1천명 (8.6%)	306만 3천명 (6.2%)	231만 4천명 (4.5%)
농가 수 (비중)	176만 7천가구 (20.1%)	138만 3천가구 (9.6%)	117만 7천가구 (6.7%)	103만 5천가구 (4.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농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6.1세,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56.0%(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4.3%)인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4%에 불과함.

[표 2] 30년간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1990년	2010년	2020년
농업경영주 평균연령	53.4세	62.3세	66.1세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비중)	32만 3,000가구 (18.2%)	54만 6,000가구 (46.4%)	57만 9,000가구 (56.0%)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비중)	25만 8,000가구 (14.6%)	3만 3,000가구 (2.8%)	1만 2,000가구 (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40세 미만의 청년농의 경우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2.8%에 해당했으나 2020년 1.2%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인 후계농의 경우에도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4.7%였으나 2020년 3.2%에 그치는 등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3] 후계농 및 청년농 규모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청년농 (40세 미만)	33,143	2.8	14,366	1.3	12,426	1.2
50세 미만	173,622	14.7	98,391	9.0	74,400	7.2
후계농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54,977	4.7	35,212	3.2	33,470	3.2
전체가구	1,177,318	100.0	1,088,518	100.0	1,035,193	100.0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 2015, 2020)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막고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력 유입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예비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의 농어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¹⁾상 ‘농업경영체’ 등이 ‘농업인’ 등과 ‘농업법인’ 등을 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예비농어업인’과 ‘예비농어업법인’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를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단으로 교육의 이수 및 영농 및 영어를 희망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예비농어업경영체”는 사실상 농업인 등과 같은 자연인으로 보임.

또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설립할 수 있음에도 예비농어업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예비농어업경영체”는 “예비농어업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둘째, 개정안의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및 지원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²⁾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음.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뿐만 아니라 농어업 종사를 준비하는 자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등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책의 내용 등이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지원,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후계농어업인 교육지원 등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³⁾가 인정되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을 통하여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농림축산식품부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관해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을 우선적용하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범위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농업종사를 준비하는 자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동법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농업인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별도로 정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5